

# 시 보

선 람	기관의 장

all ways INCHEON

제2004호

2022년 1월 27일 목요일

시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갖습니다.

## 고 시

- 인천광역시고시 제2022-28호 도시계획시설(도로: 광2-1호선, 광2-4호선) 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 2
- 인천광역시고시 제2022-30호 도시계획시설(도로: 광로2류25호선외 5개 노선) 실시계획인가 고시 ..... 4

## 공 고

- 인천광역시공고 제2022-176호 환경전문공사업 변경등록 공고 ..... 11
- 인천광역시공고 제2022-179호 환경전문공사업 변경등록 공고 ..... 12
- 인천광역시공고 제2022-187호 건설업 영업정지처분 공시송달 공고 ..... 13
- 인천광역시공고 제2022-193호 2022년도 소상공인시장진흥자금 융자 계획 공고 ..... 14
- 인천광역시공고 제2022-199호 2022년 평화도시조성 공모사업 시행 공고 ..... 21
- 인천광역시공고 제2022-205호 환경전문공사업 변경등록 공고 ..... 25

## 입법예고

- 인천광역시입법예고 제2022-8호 인천광역시 공공디자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26
- 인천광역시입법예고 제2022-9호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44
- 인천광역시입법예고 제2022-10호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  
법예고 ..... 54

회 람								
--------	--	--	--	--	--	--	--	--



발행 : 인천광역시 편집 : 대변인실

## 고 시

인천광역시고시 제2022-28호

## 도시계획시설(도로: 광2-1호선, 광2-4호선) 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도시계획시설(도로: 광2-1호선, 광2-4호선) 사업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른 실시계획(변경)인가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청 도로과(☎ 032-440-3723), 종합건설본부 토목부(☎ 032-440-5202), 동구청 도시정비과(☎ 032-770-6212), 중구청 도시개발과(☎ 032-760-7517)에 갖추어 놓았습니다.

2022. 1. 24.

### 인 천 광 역 시 장

#### 1. 사업시행지의 위치(변경 없음)

- 위치: 인천광역시 중구 신흥동 ~ 동구 송현동 일원

####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변경 없음)

- 종류: 도시계획시설(도로: 광로2-1호선, 광로2-4호선)
- 명칭: 신흥동 삼익아파트 ~ 동국제강간 도로개설공사

### 3. 사업의 면적 및 규모(변경)

(당초) 도로개설: L=2,510m, B=50~70m

(변경) 도로개설: L=2,510m, B=50~70m

- 지하차도: L=725m(BOX-Type: 430m, U-Type: 295m)

### 4. 시행자 성명 및 주소(변경 없음)

○ 성명: 인천광역시장(종합건설본부장)

○ 주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미추홀구 한나루로 607)

### 5. 사업 착수 및 준공예정일(변경)

(당초) 1999. 9. 2.~2011.12.31.

(변경) 1999. 9. 2.~2025.12.31.

###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 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변경): 붙임과 같음.

###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 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변경 없음)

### 8. 지형도면

○ 게재생략(갖추어 둔 장소의 지형도면과 같음)

○ 토지이음(<http://www.eum.go.kr>)에서 열람 가능

인천광역시고시 제2022-30호

## 도시계획시설(도로: 광로2류25호선의 5개 노선) 실시계획인가 고시

도시계획시설【도로: 광로2류25호선의 5개 노선, 사업명: 인천대로 일반화 도로개량공사(1공구, 우선시공)】사업 시행과 관련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제9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른 실시계획인가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청(고속도로재생과 ☎032-440-4154), 종합건설본부(토목부 ☎032-440-5202), 중구청(도시개발과 ☎032-760-7517), 미추홀구청(도시재생과☎032-880-4142)에 갖추어 놓았습니다.

2022. 1. 27.

### 인 천 광 역 시 장

1. 사업시행지 위치: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용현동 575-1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류: 도시계획시설(도로: 광로2류25호선, 광로2류1호선, 광로2류18호선, 광로3류4호선, 대로2류10호선, 대로3류14호선)
  - 명칭: 인천대로 일반화 도로개량공사(1공구, 우선시공)

## 3. 면적 및 규모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결정	광로	2	25	50 (35.1~150.6)	보조간 선도로	10,450	용현동 광3-4	가정동 587-1	일반 도로	-	인고 2020-178호 (2020.06.01.)	
시행	광로	2	25	50 (46.6~69.5)	보조간 선도로	1,800	용현동 광3-4	용현동 162-2	일반 도로	-	-	
결정	광로	2	1	50	주간선 도로	18,150	제2도크	서운동 57-20	고속 도로	-	인고 2000-57호 (2000.04.14.)	
시행	광로	2	1	50	주간선 도로	110	항동 1-10	신흥동 7-347	고속 도로	-	-	
결정	광로	2	18	50	주간선 도로	440	용현동 광3-4	항동 광2-1	일반 도로	-	인고 2000-57호 (2000.04.14.)	
시행	광로	2	18	50	주간선 도로	440	용현동 광3-4	항동 광2-1	일반 도로	-	-	
결정	광로	3	4	40~43	주간선 도로	1,730	신흥동 광3-2	용현동 광3-5시점	일반 도로	-	(68.10.23)	
시행	광로	3	4	40	주간선 도로	204	용현동 575-1	용현동 575-1	일반 도로	-	-	
결정	대로	2	10	30 (30~33)	보조간 선도로	9,200	대2-14 용현동	광2-8 동춘동	일반 도로	-	(66.09.02)	
시행	대로	2	10	30	보조간 선도로	159	용현동 672	용현동 345-1	일반 도로	-	-	
결정	대로	3	14	25~38	보조간 선도로	11,620	대2-10	대1-13	일반 도로	-	건고 제2701호 (1966.08.31.)	
시행	대로	3	14	25	보조간 선도로	32	광로2-25	91번지	일반 도로	-	-	

## 4. 시행자 성명 및 주소

- 성명: 인천광역시장(종합건설본부장)
- 주소: 인천광역시 정각로 29(미추홀구 한나루로 607)

## 5. 사업 착수 및 준공예정일: 실시계획인가일 ~ 2023.12.31.

##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붙임과 같음

7. 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인천대로 일반화 도로개량공사(1공구, 우선시공)”와 관련된 일체의 도시계획도로(광로2류25호선, 광로2류1호선, 광로2류18호선, 광로3류14호선, 대로2류10호선, 대로3류14호선)

- 붙임: 1. 용지조서 1부.  
2. 지장물 조서 1부. 끝.

## 용지조서

순번	소재지	지 번	지 목	지 적 (㎡)		소 유 자		관 계 인			비고
				대장 (㎡)	편입 (㎡)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 관계	
1	중구 향동7가	1-10	도	19,925.0	2,837.0	국	국토교통부				광로2-1
2	중구 신흥동3가	7-202	도	5,099.3	3,668.5	국	국토교통부				광로2-18
3	중구 신흥동3가	7-204	도	362.6	362.6	공	인천광역시				광로2-18
4	중구 신흥동3가	7-207	도	18,183.5	18,183.5	국	국토교통부				광로2-18
5	중구 신흥동3가	7-317	구	31,643.3	1,172.3	국	국토교통부				광로2-18
6	중구 신흥동3가	7-347	도	18,115.2	2,675.0	국	국토교통부				광로2-1
7	미추홀구 용현동	575-1	도	42,172.9	9,051.3	공	인천광역시				광로3-4 광로2-25
8	미추홀구 용현동	575-2	구	3,272.7	804.5	공	인천광역시남구				하수도
9	미추홀구 용현동	576-1	도	4,230.4	4,230.4	공	인천광역시				광로2-25
10	미추홀구 용현동	576-2	도	1,091.9	1,091.9	공	인천광역시				광로2-25
11	미추홀구 용현동	576-3	도	10,547.8	10,547.8	공	인천광역시				광로2-25
12	미추홀구 용현동	576-4	도	1,034.4	1,034.4	공	인천광역시				광로2-25
13	미추홀구 용현동	576-5	도	5,373.2	5,373.2	공	인천광역시				광로2-25
14	미추홀구 용현동	576-6	도	5,228.8	5,228.8	공	인천광역시				광로2-25
15	미추홀구 용현동	576-7	도	1,661.5	1,661.5	공	인천광역시				광로2-25
16	미추홀구 용현동	576-8	도	13,765.6	13,765.6	공	인천광역시				광로2-25
17	미추홀구 용현동	576-9	도	1,616.7	1,616.7	공	인천광역시				광로2-25
18	미추홀구 용현동	576-10	도	4,314.0	4,314.0	공	인천광역시				광로2-25
19	미추홀구 용현동	671	도	1,059.6	1,059.6	공	인천광역시남구				광로2-25
20	미추홀구 용현동	536-2	철	109.2	109.2	공	인천광역시				광로2-25
21	미추홀구 용현동	536-3	철	349.9	349.9	국	국토교통부				광로2-25
22	미추홀구 용현동	416-2	도	841.3	41.8	공외1인	인천광역시	한국토 지주택 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총의로 **	751.8 / 2947.8	광로2-25
23	미추홀구 용현동	406-6	대	195.0	7.9	한국토 지주택 공사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				광로2-25
24	미추홀구 용현동	536-14	철	3,813.5	177.0	국	국토교통부				광로2-25
25	미추홀구 용현동	406-1	대	252.6	194.3	공	인천광역시				광로2-25

순번	소재지	지 번	지 목	지 적 (㎡)		소 유 자		관 계 인			비고
				대장 (㎡)	편입 (㎡)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 관계	
26	미추홀구 용현동	388	도	3,094.9	77.3	공외1인	인천광역시	한국토 지주택 공사외 1인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	37.9 / 3094.9	광로2-25
27	미추홀구 용현동	363-8	대	66.4	17.1	한국토 지주택 공사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				광로2-25
28	미추홀구 용현동	363-7	대	88.6	88.6	공외1인	인천광역시남구	한국토 지주택 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	6.7/ 88.6	광로2-25
29	미추홀구 용현동	363-6	대	111.7	64.0	공외1인	인천광역시남구	한국토 지주택 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	98.2 / 111.7	광로2-25
30	미추홀구 용현동	363-5	대	82.6	78.8	한국토 지주택 공사외1 인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	한국토 지주택 공사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	33.8 / 82.6	광로2-25
31	미추홀구 용현동	363-1 0	대	72.7	72.7	한국토 지주택 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				광로2-25
32	미추홀구 용현동	561-7 4	대	149.0	49.8	한국토 지주택 공사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				광로2-25
33	미추홀구 용현동	364	도	550.0	550.0	공	인천광역시				광로2-25
34	미추홀구 용현동	561-7 1	대	92.0	19.3	한국토 지주택 공사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				광로2-25
35	미추홀구 용현동	363-4	대	441.7	231.5	한국토 지주택 공사외1 인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	한국토 지주택 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	344.7 / 521	광로2-25
36	미추홀구 용현동	363-1 7	대	79.3	79.3	한국토 지주택 공사외1 인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	한국토 지주택 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	344.7 / 521	광로2-25
37	미추홀구 용현동	364-1	도	1,219.2	1,219.2	공	인천광역시				광로2-25
38	미추홀구 용현동	363-1 4	대	90.3	19.0	한국토 지주택 공사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				광로2-25
39	미추홀구 용현동	363-1 5	대	379.9	129.5	한국토 지주택 공사외1 인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	한국토 지주택 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	11.5 / 379.9	광로2-25
40	미추홀구 용현동	368-2	도	1,541.7	1,541.7	공	인천광역시				광로2-25
41	미추홀구 용현동	362-1 2	대	180.5	99.5	한국토 지주택 공사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				광로2-25
42	미추홀구 용현동	362-1 1	도	52.2	11.5	공	인천광역시				광로2-25
43	미추홀구 용현동	362-6	대	88.9	59.3	한국토 지주택 공사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				광로2-25
44	미추홀구 용현동	368-1	도	575.9	575.9	공	인천광역시				광로2-25
45	미추홀구 용현동	362-5	대	260.4	169.3	한국토 지주택 공사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				광로2-25 대로2-10
46	미추홀구 용현동	362-1 8	대	118.5	118.5	한국토 지주택 공사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				광로2-25 대로2-10
47	미추홀구 용현동	368-4	도	65.1	65.1	공	인천광역시				광로2-25

순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소유자		관계인			비고
				대장(㎡)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관계	
48	미추홀구 용현동	345-1	도	10,840. <sub>7</sub>	3,437.8	공	인천광역시				광로2-25 대로2-10
49	미추홀구 용현동	161	도	11,008. <sub>3</sub>	5,743.0	공	인천광역시				광로2-25
50	미추홀구 용현동	162-1	도	3,163.6	1,388.7	공	인천광역시				광로2-25
51	미추홀구 용현동	162-2	도	28,079. <sub>3</sub>	14,266. <sub>5</sub>	공	인천광역시				광로2-25
52	미추홀구 용현동	164	도	3,358.0	1,519.4	공	인천광역시				광로2-25
53	미추홀구 용현동	91	도	29,666. <sub>1</sub>	11,441. <sub>0</sub>	공	인천광역시남구				광로2-25 대로2-10 대로3-14
54	미추홀구 용현동	669	도	271.5	271.5	국	국토교통부				광로2-25
55	미추홀구 용현동	670	도	354.1	354.1	공	인천광역시남구				광로2-25
56	미추홀구 용현동	669-2	도	96.2	96.2	국	국토교통부				광로2-25
57	미추홀구 용현동	670-2	도	49.5	49.5	국	국토교통부				광로2-25
58	미추홀구 용현동	669-4	도	49.3	49.3	국	국토교통부				광로2-25
59	미추홀구 용현동	664-1 4	철	802.6	466.1	국	국토교통부				광로2-25
60	미추홀구 용현동	671-2	도	48.4	48.4	국	국토교통부				광로2-25
61	미추홀구 용현동	669-3	도	47.0	47.0	국	국토교통부				광로2-25
62	미추홀구 용현동	670-3	도	21.1	21.1	국	국토교통부				광로2-25
63	미추홀구 용현동	670-4	도	16.0	16.0	국	국토교통부				광로2-25
64	미추홀구 용현동	671-4	도	3.8	3.8	국	국토교통부				광로2-25
65	미추홀구 용현동	671-3	도	27.3	27.3	국	국토교통부				광로2-25
66	미추홀구 용현동	664-8	철	2,685.4	0.8	국	국토교통부				광로2-25
67	미추홀구 용현동	669-1	도	3,845.6	3,845.6	공	인천광역시				광로2-25
68	미추홀구 용현동	670-1	도	1,980.2	1,980.2	공	인천광역시남구				광로2-25
69	미추홀구 용현동	671-1	도	1,560.3	1,560.3	공	인천광역시남구				광로2-25 대로2-10
70	미추홀구 용현동	672	도	17,695. <sub>6</sub>	5,927.2	공	인천광역시				광로2-25 대로2-10
71	미추홀구 용현동	163	도	7,109.4	1,418.3	공	인천광역시				광로2-25 대로3-14

순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소유자		관계인			비고
				대장(㎡)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관계	
72	미추홀구 용현동	362-2 0	대	8.0	8.0	한국토 지주택 공사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				대로2-10
73	미추홀구 용현동	362-1	대	90.1	90.1	한국토 지주택 공사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				대로2-10
74	미추홀구 용현동	362-2	대	138.5	81.8	한국토 지주택 공사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				대로2-10
75	미추홀구 용현동	569-1 5	도	16.0	16.0	국	국토교통부				대로2-10
76	미추홀구 용현동	569-1 7	도	12.0	12.0	한국토 지주택 공사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				대로2-10
77	미추홀구 용현동	569-1 0	대	83.0	47.2	한국토 지주택 공사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				대로2-10
78	미추홀구 용현동	569-1 6	도	1.0	1.0	공	인천광역시				대로2-10
79	미추홀구 용현동	569-4	전	40.0	35.4	한국토 지주택 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				대로2-10
80	미추홀구 용현동	570-5	대	410.0	13.0	한국토 지주택 공사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				대로2-10

## 지장물 조서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물건의 종류	구조 및 규격	연면적	저축연 면적	소유자		비고
							성명	주소	
1	용현동	536-2	컨테이너	금속1.8×2.0	3.6㎡	3.6㎡	남인천 우체국	인천 남동구 경인로 *** (간석동)	
2	용현동	536-3	컨테이너	금속1.8×2.0	3.6㎡	3.6㎡	남인천 우체국	인천 남동구 경인로 *** (간석동)	
3	용현동	536-3	컨테이너	금속3.0×6.0	18㎡	18㎡	용현2동	인천 미추홀구 용현동 ***-*	
4	용현동	536-2	컨테이너	금속2.4×6.0	14.4 ㎡	14.4 ㎡	용현2동	인천 미추홀구 용현동 ***-*	
5	용현동	536-1	컨테이너	금속3.0×6.0	18㎡	18㎡	용현2동	인천 미추홀구 용현동 ***-*	
6	용현동	416-1	컨테이너	금속3.0×6.0	18㎡	18㎡	용현2동	인천 미추홀구 용현동 ***-*	
7	용현동	416-4	간이화장실	PE1.0×1.5	1.5㎡	1.5㎡	용현2동	인천 미추홀구 용현동 ***-*	

## 공 고

## 인천광역시공고 제2022-176호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환경전문공사업 변경등록 사항을 공고합니다.

2022년 1월 21일

인천광역시장

## 환경전문공사업 변경등록 공고

변경등록사항 : 기술인력 변경

사업장명 (분야 및 등록번호)	대표자	등록일자	변경사항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주)비전이엔테크 (대기환경전문공사업, 제132호)	김상곤	2020. 5. 20.	기술인력 변경	이연화 (전기기사) [해임]	이호진 (화공기사) [선임]

## 인천광역시공고 제2022-179호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환경전문공사업 변경등록 사항을 공고합니다.

2022년 1월 21일

인천광역시장

**환경전문공사업 변경등록 공고**

변경등록사항 : 기술인력 변경

사업장명 (분야 및 등록번호)	대표자	등록일자	변경사항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주)이엠엔지니어링 (대기환경전문공사업, 제37호)	신진욱	2016. 3. 31.	기술인력 변경	이우범 (기계 중급기술자) [선임]	신진욱 (기계 중급기술자) [선임]

## 인천광역시공고 제2022-187호

## 건설업 영업정지처분 공시송달 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업체의 영업정지 처분사항을 법인의 본점 소재지 및 대표자 주소지로 등기발송 하였으나 취척인불명, 이사 등으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2022년 1월 27일  
인천광역시장

1. 공고기간: 2021. 1. 27.~2022. 2. 10.(14일간)

## 2. 처분통지 사항

업체명 (대표자)	처분업종	소재지	처분사유	위반법규	처분내용	처분일
에이치엔디 종합건설(주) (박진형)	건축공사업 (02-1335)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 124-18, 장우빌딩 901호	건설업의 등록기준 위반 (보증가능금액확 인서 실효)	「건설산업 기본법」 제10조	영업정지 6개월 (2022. 1. 12.~ 2022. 7. 11.)	2022. 1. 11.

3. 위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27조 및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문서도달일)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건설심사과 ☎(032)440-3742로 문의바랍니다.

인천광역시공고 제2022-193호

## 2022년도 소상공인시장진흥자금 융자 계획 공고

인천 관내 소상공인을 위한 2022년도 소상공인시장진흥자금 융자 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2. 1. 27.

인천광역시장

### 1. 융자계획

구분		내용
지원대상자		관내 소상공인 (단, 신용보증의 경우 무점포기업은 업력 6개월 이상일 것)
지원대상 자금		점포시설개선 또는 운영자금
융자조건 및 지원한도	규모	융자총액 70억원
	한도	업체당 5천만원(신용보증서는 2천만원한도) 이내
	금리	0.8%(변동금리)
	상환기간	4년(1년 거치, 3년 분기별 균등상환)

### 2. 지원 제외 대상

- 세금을 체납중인 사업자
- 인천신용보증재단의 현재 보증거래 중인 기업  
(단, 신용보증이 아닌 부동산, 기타 담보로만 융자신청 업체는 인천신용보증재단에 현재 보증거래중이어도 융자가능)
- 사치·향락 등 재보증 제한업종[붙임1 참조]

### 3. 융자신청 및 조건

- 접수기간 : 2022. 2. 3. ~ 12. 31. (보유재원 소진시 조기종료)
- 신청접수처 : 인천신용보증재단

- 용자조건 : 담보(신용보증서, 부동산, 기타담보)
  - ※ 신용보증재단의 심사규정 및 해당은행의 여신심사규정에 따름.
- 취급은행 : (주)신한은행
- 유효기간 : 지원결정일로부터 3개월이내(\*단 사업기간내)

※ 용자처리절차

소상공인 신청 → (접수, 지원결정)신용보증재단 → (용자조건 확인, 용자실행)신한은행

#### 4. 구비서류(소정서식)

- 용자신청서 1부[서식1 참조]
- 사업계획서 1부(사업추진 관련 증빙서류 첨부)[서식2 참조]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부[서식3 참조]
- 사업자등록증명원 1부(\*최근 1개월 이내)
- (세금체납확인서류) 국세납세증명서 1부, 지방세납세증명서 1부
  - ※ 신청서류는 인천신용보증재단 각 지점에서 교부

#### 5. 문 의 처

- (접수, 신용보증서발급 등)인천신용보증재단 남동지점(☎260-1500~3), 부평지점(☎508-1954~7), 서인천지점(☎569-0321~4), 남부지점(☎889-3611~4), 계양지점(☎542-3911~4), 중부지점(☎766~8090~3), 연수지점(☎811-9531~5)
- (부동산담보, 기타담보 문의) 신한은행 인천소재 영업점(☎1599-8000)
- (기타사항) 인천광역시 소상공인정책과(☎440-4228)

#### 6. 기타사항

-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용자지원 결정 또는 대출을 받은 경우, 지원용도의 사용, 기타 사업의 추진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용자결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붙임1】

**보증제한업종 ①**

표준산업분류	업종
56211	일반유흥 주점업
56212	무도유흥 주점업
68	부동산업. 다만, 부동산관련 서비스업(682)은 제외
91121	골프장 운영업
91291	무도장 운영업
91249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9612 중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46102 중	담배 중개업
46107 중	골동품, 귀금속 중개업
46209 중	잎담배 도매업
46333	담배 도매업
46416 및 46417 중	모피제품 도매업. 단, 인조모피제품 도매업 제외
64	금융업
65	보험 및 연금업
66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다만 손해사정업(66201), 보험대리 및 중개업(66202)은 제외
75993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 다단계판매자가 동조 제5호에서 정한 다단계판매(업)를 영위하는 경우 업종을 변형하여 운영되는 도박.향락 등 불건전업종, 기타 국민보건.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투기조장 등 우려가 있다고 중앙회장이 지정한 업종

## 보증제한업종 ②

구분	한국표준산업분류	세부업종
도박 및 게임 관련	• 기타 오락용품 제조업(33409) 중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 장난감 및 취미용품 도매업(46463) 중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도매업
	• 게임용구, 인형 및 장난감 도매업(47640) 중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소매업
	• 전자상거래 소매 중개업(47911) 및 전자상거래 소매업(47912) 중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성인용품 도소매업
	• 기타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임대업(76390) 중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
	•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5821) 중	• 도박 및 사행성, 불건전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그외 기타 정보서비스업(63999) 중	• 온라인게임아이템중개업, 게임아바타중개업
	• 그외 기타 분류안된 사업지원 서비스업(75999) 중	•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 경품용 상품권 판매업
	• 잡지 및 정기 간행물 발행업(58122) 중	• 경마, 경륜, 경정 관련 잡지 발행업
	• 경주장 운영업(91113)	• 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
• 점술 및 유사서비스업(96992)	• 점집, 무당, 심령술집 등	
건전 문화 관련	• 그외 기타 분류안된 상품 전문 소매업(47859) 중	• 성인용품 판매점
	• 탐정 및 조사 서비스업(75330) 중	• 흥신소
	• 오락장 운영업(9122) 중	• 성인용게임장, 성인오락실, 성인PC방, 전화방
	• 그 외 기타 달리 분류되지 않은 개인 서비스업(96999) 중	• 휴게텔, 키스방, 대화방
투기 조장	• 경영컨설팅업(71531) 중	• 기획부동산업 <sup>주)</sup>

주) (운영형태)부동산 판매를 목적으로 설립되어 개발가능성이 거의없는 지역의 임야나 농지를 대단위로 매수하여 소규모 단위(330㎡, 660㎡ 등)로 분할한 후, 다단계판매와 텔레마케팅(전화권유 판매)과 같은 조직적 판매망을 통해 부동산을 고가(시세의 3~5배)에 매도하는 업체

【서식1】 용자신청서

## 2022 소상공인시장진흥자금 용자 신청서

신청인	업체명		대표자		전화번호	
	소재지			업종(업태)		
	자산총액	백만원		상시종업원	명	
	담보	예)신용보증,부동산,기타	점포현황	예)유점포,무점포	업력	예)6개월이상,6개월미만
자금신청	총소요액	백만원	용자신청액	백만원	자부담	백만원
용도	<input type="checkbox"/> 점포시설개선		<input type="checkbox"/> 운영자금			

인천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용자를 신청합니다. 신청내용에 허위사실이 있을 경우 신청 취소 및 참여제한 등의 조치에 동의합니다.

2022년 월 일

신청인 : (인)

인천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귀하

※ 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소정서식), 기타 사업추진에 따른 증빙서류(견적서, 계약서 등)
2.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부(소정양식)
3. 사업자등록증명원(최근 1개월이내) 1부
4. (세금체납확인서류)국세납세증명서 1부, 지방세납세증명서 1부

【서식2】 사업계획서

## 사업계획서

 현황

구분	상호	소재지	대표자	업종 (업태)	면적(m <sup>2</sup> )		비고
					대지	연건축	
기존							
개선후							

 사업기간 : 세부사업 및 자금 소요계획(산출근거 : 별지작성 가능)

○ 세부 사업내용

○ 소요자금 산출내역

 융자신청액 : 백만원 기타사항

## 【서식3】개인정보동의서

## 개인정보 수집 · 이용 · 제공 동의서(안)

## 소상공인시장진흥자금 융자신청에 따른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회사명

대표자 성명

본인은 소상공인시장진흥자금 융자신청에 따라 본인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동의인 : (서명 또는 인)

인천신용보증재단 이사장 귀하

## 【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 인천신용보증재단은 동 융자신청의 접수 및 처리를 위해 융자신청시 아래와 같은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 필수 항목 : 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 융자신청서류 상의 개인정보

## 【 개인정보 수집 목적 】

- 인천시 소상공인시장진흥자금 융자 신청, 심사, 결정통보 및 사후관리

## 【 개인정보 보유 기간 】

- 5년(단, 신용보증이 종료되지 않은 경우, 신용보증 종료일까지 보유·이용됩니다)

## 【 개인정보 수집 등의 거부의 권리 】

- 인천신용보증재단은 보다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는 인천시 중소기업육성자금 관련 업무시 활용되는 정보로, 제공을 원하지 않는 경우 자금지원접수를 할 수 없습니다.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 【 제3자 제공 동의 】

- 귀하가 제출한 개인정보는 인천시의 소상공인 지원정책 및 통계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아래 내용에 따라 제공하게 됩니다
- 제공기관 : 인천광역시
- 정보 제공 범위 : 융자신청서, 계획서, 확인서, 사업자등록증명원, 국세/지방세원납증명서에 기재된 사항, 자금 지원현황(지원금액, 지원내용, 지원조건 등)
- 정보의 이용 목적 : 인천시 소상공인 지원정책 및 통계 등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
- 보유 및 이용기간 : 5년(단, 신용보증이 종료되지 않은 경우, 신용보증 종료일까지 보유·이용됩니다)

## 【 개인정보 제3자 제공의 거부의 권리 】

- 인천신용보증재단은 보다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제3자에게 기본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동의하지 않을 경우 자금지원접수를 할 수 없습니다.

제3자 제공 동의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인천광역시공고 제2022-199호

## 2022년 평화도시조성 공모사업 시행 공고

인천광역시에서는 평화·통일에 대한 시민의식 제고 및 공감대 확산을 통한 평화도시인천 실현을 위해 「2022년 평화도시조성 공모사업」을 아래와 같이 제안 공모하오니 인천 소재 기관·단체·연구소·기업 등에서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22년 1월 26일

인천광역시장

### 1. 신청자격

- 공고일 기준 인천시 소재 기관·단체·대학기업 등 ☞ 붙임 1. 응모자격 등 참고

### 2. 지원사업 분야

#### 가. 시민강좌 분야

- (제안) 찾아가는 평화 통일 토크!(Talk) 쇼(Show)
  - 인천 지역 어디에서라도, 통일 그리고 평화를 함께 이야기하는 토크쇼 진행
  - 강의 장소를 10개 군·구로 정하여 1회씩 진행(총10회)
- (제안) 영화나 드라마로 배우는 ‘북한 바로 알기’
  - 영화나 드라마 등 재미있는 콘텐츠를 활용하여 북한의 언어, 주거, 문화 등을 살펴보고 실질적인 생활을 이해할 수 있는 강좌 운영
- 기타 평화 통일 관련 이색적이고 알찬 교육 등

#### 나. 시민참여 행사 분야

- (제안) 평화를 다큐로 만들다
  - 실향민, 북한이탈주민 등을 대상으로 한 다큐 제작
  - 자료수집→인터뷰 및 촬영→다큐 제작→상영회
- (제안) 남북교류 기념일(6.15, 10.4 등) 연계 행사
- 기타 다양하고 이색적인 시민참여 행사(평화콘서트, 북한요리체험 등)

## 다. 체험 및 탐방 분야

- (제안) 평화 통일 블로거(blogger)의 남북 이음 지역 탐방
  - 접경지역(서해5도, 강화)과 DMZ 평화의 길 등 남북이 이어지는 지역 탐방
  - 탐방지 랜선 투어-탐방-탐방결과 블로그 게시(1명당 지역별 5회 이상)
- (제안) 국제기구 종사자들과 함께하는 ‘평화의 섬 체험’
  - 인천 유치 국제기구(UNAPCICT, UNESCAP, GCF 등) 근무자 및 가족들에게 강화 체험 기회를 제공하여 접경지 인천의 중요성과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 유도
  - DMZ 평화의 길(강화전쟁박물관, 평화전망대, 의두분초, 불장돈대, 대룡시장)을 중심으로 인천난정평화교육원 전시관 등 강화 주요 견학지 답사
- (제안) 청년들의 ‘슬기로운 섬 생활’
  - 2030 청년들을 대상으로 인천 지역 섬 탐사를 진행하여 접경지역 섬에 대한 관심과 평화도시로서의 인천의 상징성에 공감 유도
  - 사전교육, 탐사 및 현지 활동, 전시발표회(사진전, 영상 상영)
- 기타 평화와 통일 의식을 함양할 수 있는 체험 및 탐방

◇ 기관·단체별 총 2건까지 제안 가능(\*분야 중복 가능)하며, (제안)사업 신청시 우대

3. 지원범위: 1개 사업당 10백만원 ~ 40백만원 범위 내

4. 사업기간: 2022. 4월 ~ 11월

### 5. 신청 기간 및 접수방법

가. 신청기간: 2022. 2. 3.(목) ~ 2.18.(금) 24:00까지

나. 접수방법: ‘문서24’ 사이트(<https://open.gdoc.go.kr>)

- 법인, 단체사용자로 회원가입, 문서작성, 전송

◆ ‘문서24사이트’ 접속 - ☰ (전체메뉴) - 소통마당 - 자료실 - 「문서24」서비스이용가이드(민간용) 참조  
(수신처 : 인천광역시 남북교류협력담당관실)

## 6. 신청시 제출서류

- 가. 지원신청서 및 기관·단체소개서
  - 나. 사업계획서
  - 다. 기타(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투입 인력 계획, 자부담 협약서, 공모참가 서약서, 공동참여 당사자 간 협약서 등)
- ※ 인천광역시 홈페이지(<http://www.incheon.go.kr>) ‘인천소식-고시공고’게시

## 7. 지원사업 선정 및 통보

- 가. 선정 및 교부액 결정 : 3단계 심사  
(사업부서 ⇨ 전문가 심사 ⇨ 평화도시조성위원회 심의)
- 나. 선정기준: 사업단체역량, 사업추진방법, 사업예산, 전년도 평가결과 등
- 다. 선정결과: 인천광역시 홈페이지(<http://www.incheon.go.kr>) ‘인천소식-고시공고’ 게시 및 개별통보(문자발송)

## 8. 보조금 집행, 사업정산 및 평가

- 가. 선정된 사업에 대하여 시기별로 나누어 상·하반기 보조금 교부 및 집행
- 나. 중간점검 및 종합평가 실시(필요시 현지조사 실시 등)
- 다. 사업완료시 사업실적 및 정산보고서 제출

## 9. 기타사항

- 가. 사업신청 시 자체부담예산은 확정된 보조금의 5% 이상을 반드시 부담하여야 함.
- 나. 사업계획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불성실한 사업계획은 심의대상에서 제외함
- 다.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기관·단체는 보조금 환수 및 고발 조치함.
- 라. 선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중간평가와 종합평가(보조금정산 포함)를 실시하여 보조사업 목적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부적정하게 집행한 부분은 전액 환수함.
- 마. 2022년 게시되는 서식을 반드시 사용하고 요건 부적합 시에는 미접수 처리함.

- 바. 제안서는 반환하지 않으며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을 포기하거나 부진(축소, 조기중단 등)할 시 사업 참여 제한 및 손해배상청구 등의 행정·재정적 조치함.
- 사. 선정된 제안사업에 대한 저작권은 제안자에게 있으나 최종성과물(2차적 저작물, 배포·활용권 등)의 저작재산권은 인천시에 있음.
- 아.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될 것을 고려하여 현실적으로 실행 가능하고 코로나-19 확산 상황에 따라 유연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사업계획 수립
- 자. 기타 본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인천광역시 홈페이지(<http://www.incheon.go.kr>) - 인천소식-고시공고 페이지 참고바람.

- 붙임 1. 응모자격 등  
2. 신청서(작성서식)

☞ 기타 문의사항 : 인천광역시 남북교류협력담당관실(032-440-4318)

## 인천광역시공고 제2022-205호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환경전문공사업 변경등록 사항을 공고합니다.

2022년 1월 25일

인천광역시장

**환경전문공사업 변경등록 공고**

변경등록사항 : 기술인력 변경

사업장명 (분야 및 등록번호)	대표자	등록일자	변경사항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주)이엠엔지니어링 (수질환경전문공사업, 제36호)	신진욱	2008. 2. 1.	기술인력 변경	박지현 (수질환경산업기사) <b>[해임]</b>	최순규 (수질환경산업기사) <b>[선임]</b>
				이우범 (기계 중급기술자) <b>[해임]</b>	안주형 (기계설계기사) <b>[선임]</b>

## 입법예고

## 입법예고문

인천광역시입법예고 제2022-8호

「인천광역시 공공디자인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2년 1월 27일

인천광역시장

### 인천광역시 공공디자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1. 개정이유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공공 디자인 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관련법령 취지 및 실정에 맞도록 정비 및 신설하고, 현행 규정의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보완·반영 하기 위함.

#### 2. 주요내용

가. 조례명칭을 관련법령 취지에 맞도록 “인천광역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로 변경(조례명칭)

- 나. 관련법령에 근거하여 위임된 조례임을 추가 명시(안 제1조)
- 다. 용어정의를 구체적이고 일관성있게 정비 및 신설내용 추가(안 제2조)
- 라. 공공디자인 기본원칙에 실정에 맞도록 신설내용 추가(안 제3조)
- 마.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하여 본 조례의 효력유지(안 제5조)
- 바.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정비(안 제6조)
- 사. 우수공공디자인 인증제품을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도록 정비(안 제7조)
- 아. 공공디자인위원회 심의·자문 대상을 실정에 맞도록 정비 및 신설내용 추가(안 제8조)
- 자. 공공디자인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 및 공공디자인 업무의 활성화를 위하여 실정에 맞도록 위원회 위원명수를 60명으로 증원 하고 위원 전문분야 확대(안 제9조)
- 차. 공공디자인위원회의 간사를 실정에 맞도록 공공디자인 업무의 해당 팀장으로 변경(안 제12조)
- 카. 공공디자인위원회 소위원회의 위원장을 실정에 맞도록 공공디자인 업무의 해당 국장으로 변경(안 제13조)
- 타. 법령에 명시된 용어 등으로 내용 정비(안 제4조, 안 제6조, 안 제7조, 안 제8조, 안 제16조)
- 파. 종전 조례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를 종전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경과조치 내용 추가(안 부칙)

###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2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참조 : 도시경관건축과장, 주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인천광역시청 본관 108호 도시경관건축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담당자 이은미(☎032-440-4792, 모사전송 032-440-8681, 전자문서 bidan63@korea.kr)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연락처  
번호

※ 이 조례의 입법안은 인천광역시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홈페이지 주소: <https://www.incheon.go.kr/legal/LE030104>)

### 4. 참고

인천광역시 공공디자인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 인천광역시 공공디자인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인천광역시 공공디자인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인천광역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제 9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인천광역시 공공디자인을 종합적이고 합리 적으로 개선· 관리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여 시민의 편익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공디자인”이란 공공기관이 인천광역시(이하“시”라 한다)에 조성·제작·설치·운영 및 관리하는 공공공간·공공시설물·공공시각매체(이하 “공공시설물등”이라 한다) 등의 심미 성·기능성·상징성을 높이기 위한 계획·사업 또는 행위와 그 결과물을 말한다.
2. “공공기관”이란 시, 「지방공 기업법」에 의하여 시가 설립한 지방공기업,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시가 출연·출자한 법인을 말한다.
3. “공공디자인 공공시설물등”이란 [별표 1]에서 정하는 시설물 등으로서 일반 공중을 위하여 시, 공공기관 등이 조성·제작·설치·운영 또는 관리

하는 시설물, 용품, 시각 이미지 등을 말한다. 이 경우 시 예산이 투입된 군·구 추진사업, 시로 기부채납 예정 사업, 시에서 관리 예정인 사업에 포함된 시설물, 용품, 시각 이미지 등을 포함한다.

4. “모두를 위한 디자인”이란 장애의 유무, 연령, 성별, 국적, 문화적 배경 등에 관계없이 제품, 건축, 환경, 서비스 등을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설계하는 것을 말한다.

5. “범죄예방도시디자인”이란 범죄를 차단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하여 건축물 및 주변 환경을 범죄로부터 예방할 수 있는 구조로 디자인하는 행위 및 그 결과물을 말한다.

6. “사회문제해결디자인”이란 다양한 사회문제에 대한 시민들의 요구를 파악하고 시민과 협력하여 디자인을 통해 효율적인 해결방법을 제시하는 디자인 과정 및 활동을 말한다.

제3조(공공디자인 기본원칙) 공공디자인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른다.

1. 공공적 가치와 공공의 이익 구현
2. 지역특성을 반영한 도시 정체성과 독창적 이미지 형성
3. 심미성과 쾌적성, 기능성과 안전성 확보
4. 지속가능성 및 친환경성 추구
5. 창의적인 예술성 추구
6. 사용자 중심의 디자인 적용
7. 모두를 위한 디자인
8. 범죄예방도시디자인
9. 사회문제해결디자인

제4조(시장의 책무) 인천광역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공디자인의 진흥 및 통합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고, 필요한 재원의 확충과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공디자인 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2장 지역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 등

제6조(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공공디자인 진흥과 수준향상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이하 “진흥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진흥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공디자인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권역별·지역별 및 가로별 특성을 반영한 공공디자인 구축·관리
3. 공공디자인에 관한 제도개선과 주요 시책
4. 그 밖에 공공디자인의 진흥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진흥계획을 수립·변경한 때에는 이를 인천시보에 공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7조(표준디자인 및 가이드라인 수립)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진흥계획의 세부적용과 시행을 위하여 표준디자인 및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의 장은 공공디자인 사업을 추진할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야 하며, 가능한 표준디자인 및 우수

공공디자인 인증제품을 사용토록 권장할 수 있다.

### 제3장 공공디자인위원회 등

제8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공공디자인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 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1. 진흥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2. 표준디자인 및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3. 공공시설물등의 디자인 개발에 관한 사항
4. 우수공공디자인의 인증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공공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한다.

1. 공공기관 중 제2항제2호의 지방공기업, 법인 등에서 공공디자인 진흥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 중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사항
2. 그 밖에 공공디자인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공공디자인위원회 심의·자문대상은 [별표 1]에 따른 공공시설물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해당한다.

1. 공공공간 조성사업: 총 사업비 10억원이상
2. 공공시설물: 총 사업비 1억원이상
3. 공공시각매체: 사업비 1억원이상

4. 그 밖에 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기존 공공시설물의 단순 보수·교체공사로 외부 디자인의 변경이 없는 경우
  2. 군수·구청장이 발주하는 사업 중 국비 또는 시비 지원이 없는 경우
  3. 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사업으로 기본적인 외부디자인 변경 없이 공공시설물등 사업비의 10분의 1 범위에서 설계를 변경하는 경우
  4. 일정 구간 내에 설치된 기존 공공시설물등의 연속성을 위해 추가 설치하는 경우
  5. 심의대상 중 우수 공공디자인 인증제품 및 시 공공시설물 표준디자인을 적용하는 경우
  6.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동일·유사한 디자인 심의를 거친 경우
  7. 재해·재난 상황 등 긴급한 설치 및 복구공사가 필요한 경우
  8. 그 밖에 시장이 심의에서 제외할 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⑥ 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를 보완하여 시행하도록 한 경우,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하며, 그 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 ⑦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관계법령 등에 의하여 설치된 위원회에서 심의·자문을 받은 사항과 설계·시공 일괄입찰(턴키) 공사 및 설계공모 방식 등으로 시행하는 공사의 경우는 심의·자문대상에서 제외한다.

⑧ 심의·자문 요청 시기는 디자인이 수반되는 기본설계 완료 이전에 하여야 하며, 기본설계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실시설계 완료 이전에 하여야 한다.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6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균형발전정무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시 및 관계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시의회 의원, 도시·건축·조경·토목·교통·환경·디자인·조명·미술·색채·예술·범죄예방도시디자인·공공조형물·모두를 위한 디자인·영상매체 등의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시 및 관계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위원 수는 전체 위원 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④ 시장은 위원이 사임의사가 있을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심의·자문에 응하지 아니한 때,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제10조(위원의 제척 및 회피)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위원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자문에서 제척하여야 한다.

1. 위원이 해당 심의·자문 대상과 관련하여 용역·자문 및 연구 등을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심의·자문 대상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개최하기 전에 제1항의 규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 위원에게 알려야 하며, 회피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당해 안건에서 제척하여야 한다.

제11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회의 등) 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공공디자인 업무의 해당 팀장이 한다.

④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의 상정안건에 대한 관리 및 사전검토를 위하여 위원회에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⑥ 위원회는 안건 심의와 그 밖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 등을 듣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3조(소위원회)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 ②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공공디자인 업무의 해당 국장으로 한다. 다만, 해당 국장의 부재시 위원 중에서 위원장을 호선한다.
- ③ 소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안건은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것으로 본다.
- ④ 소위원회의 회의는 제12조를 준용한다.

제14조(수당 등)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인천광역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4장 공공디자인의 진흥

제16조(공공디자인업무 협의 등) ① 공공기관에서는 다음 각 호의 디자인 관련 사무를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 디자인전담부서의 장과 협의를 하여야 한다.

1. 공공디자인 대상시설물 사업과 관련된 제안공모 및 심사
2. 제8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자문사항 외에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디자인관련 사업

② 공공디자인에 관한 협의 요청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디자인관련 제안공모 및 심사계획 수립 시
2. 그 밖에 공공기관에서 필요할 경우. 다만, 디자인이 수반되는 사업계획의 경우 기본설계 완료 전

③ 디자인관련 협의요청을 받은 시 디자인전담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시행사업과 주변 환경과의 조화
2. 사업내용의 디자인 요소에 대한 적정성
3. 기존시설물과의 디자인통합 및 이미지연계
4. 공공디자인 관련 기본계획과의 연계성

④ 디자인전담부서의 장은 협의과정에서 의견이 있을 때에는 이를 보완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부서에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7조(디자인자문관) ① 시장은 디자인사업 중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3조제2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 중에서 관련분야의 전문가인 자를 디자인자문관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② 디자인자문관의 임기는 해당 사업의 추진기간을 고려하여 시장이 정하며, 필요한 경우 임기를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제13조제4항의 사유에 따라 위원회 위원을 지속할 수 없는 경우 임기 전이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제18조(공공디자인안의 공모) ① 시장은 공공디자인의 수준향상과 민간참여를 위하여 공모를 통하여 공공디자인안을 선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하여 시행하는 공모의 대상·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19조(우수공공디자인 인증 등) ① 시장은 공공디자인의 개발 및 확산을 촉진하기 위하여 우수 공공디자인 인증제도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을 취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디자인 심의 시 제1항에 따라 인증된 우수 공공디자인을 권장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우수 공공디자인의 인증 또는 취소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20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① 시장은 공공디자인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공공기관에 공공디자인의 정책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한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공공기관 또는 법인·단체와 정보기술의 교류 및 협력을 위하여 노력하며, 공공디자인 수준향상에 필요한 자료의 제작·보급과 교육·홍보 등의 활동을 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공공디자인 추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의 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인천광역시 공공디자인 조례」 제13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위촉된 공공디자인위원회의 위원은 제9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공공디자인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위촉위원의 임기는 종전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별표 1] 공공디자인위원회 심의·자문대상(제8조제4항 관련)

분 류	세 부 항 목	
공공공간	공원, 광장(지하광장 포함), 자전거도로,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	
F0 F0 시 제 매	도로 시설물	가로등, 펜스, 볼라드, 신호등주, 버스 및 택시쉘터, 지하철·지하보도출입구, 외부 엘리베이터, 자전거보관대, 방음벽, 교량,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
	편의 시설물	벤치, 파고라, 가로화분대(플랜터), 수목보호덮개, 관광안내소, 음수대, 분수대, 가로판매대, 구두수선대, 휴지통, 간이화장실,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
	공급 시설물	맨홀덮개, 지하철 환기구, 배전함, 신호등 및 가로등 제어함, 제설함, 소화전, 전화부스, 전신주,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
공공 시 각 매 체	교통관련 시각매체	공공 및 사설안내표지, 주차장안내표지 및 주차요금표지, 버스 및 택시 정류장표지, 버스 및 지하철 노선안내도,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
	보행관련 시각매체	보행자안내표지, 지역안내사인, 관광안내표지, 관광안내도, 문화재설명표지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
	영상정보 시각매체	대기 오염 전광판, 교통 상황 전광판, 버스정보 전광판, 디지털 영상매체,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
	환경연출 시각매체	벽화·슈퍼그래픽, 공사장가설울타리·가설가림막,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

## 관련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관계법령	<input type="checkbox"/>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input type="radio"/> 별지 작성
관련법규 정비대상	“해당사항 없음”
특이사항	“해당사항 없음”

### 〈관계법령 발췌사항〉

□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지역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의 수립 등)**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종합계획에 따라 지역 여건을 고려한 지역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별도로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계획을 제9조에 따른 지역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변경한다.

③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역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관할 지역의 해당 공공시설물을 관리하는 국가기관등의 장은 지역계획의 수립·시행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④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계획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을 지역 주민들에게 알려야 하며, 지역 주민 및 지역계획의 수립·변경에 따른 이해관계자는 지역계획을 수립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지역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에 대하여 제안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지역계획의 수립·시행, 제4항에 따른 지역계획 수립에 관한 안내 및 제안의 처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9조(지역위원회)** ① 지역계획의 수립·시행, 제15조제2항에 따른 추진협의체에 대한 자문 및 그 밖에 조례로 정하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소속으로 지역의 공공디자인 진흥을 위한 위원회(이하 “지역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지역위원회의 위원 중에는 공공디자인과 관련한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사람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그 밖에 지역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0조(공공디자인사업 시행의 원칙)** 국가기관등의 장은 공공디자인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다음 각 호를 기본원칙으로 한다.

1. 공공의 이익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며, 아름답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도록 한다.
2. 연령, 성별, 장애 여부, 국적 등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환경을 이용할 수 있는 디자인을 지향한다.
3. 국가·지역의 역사 및 정체성을 표현하고, 주변 환경과 조화·균형을 이루도록 한다.
4. 공공디자인에 관한 국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며, 의사결정 과정에 국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마련한다.
5. 공공시설물등을 관할하는 관계 기관과 적극적 협력체계를 통하여 통합적 관점의 공공디자인이 구현될 수 있도록 한다.
6. 그 밖에 이 법에서 정한 사항을 따르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제3조제3항 관련)

1. 비용 발생 요인

- 추가비용 발생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련규정 등을 정비 하고 조례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개선사항을 정비하는 것으로 비용이 발생하지 않음

4. 작성자

도시계획국 도시경관건축과장 손병득

## 입법예고문

인천광역시입법예고 제2022-9호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2년 1월 27일

인천광역시장

##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입법예고

## 1. 제안이유

장기적으로 운영되지 않거나, 지정 필요성이 없어진 개방형직위에 대한 지정을 해제하여 개방형직위 운영의 내실을 기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가. 개방형직위 임용 조항 삭제(안 제6조의3제2항)

나. 개방형직위 임용 조항 삭제(안 제6조의5제2항)

- 다. 개방형직위 임용 조항 삭제(안 제7조제3항)
- 라. 개방형직위 임용 조항 삭제(안 제8조제3항)
- 마. 개방형직위 임용 조항 삭제(안 제11조제3항)
- 바. 개방형직위 임용 조항 삭제(안 제20조제2항)
- 사. 개방형직위 임용 조항 삭제(안 제61조제2항)

###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2월4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참조: 정책기획관, 주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 본관 304호)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담당자 원윤호(전화번호 032-440-2152, 팩스번호 032-440-8628, 전자메일 manyearsnow@korea.kr)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연락전화번호
- ※ 이 조례(규칙)의 입법안은 인천광역시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홈페이지 주소: <https://www.incheon.go.kr/legal/>)

### 4. 참고사항

- 가. 신·구조문대비표: 붙임 참조
- 나. 관계법령: 붙임 참조
- 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붙임 참조

인천광역시규칙 제 호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3제2항을 삭제한다.

제6조의5제2항을 삭제한다.

제7조제3항 중 “평가담당관 및 재정관리담당관”을 “평가담당관”으로 한다.

제8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11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20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61조제2항을 삭제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22년 2월 17일부터 시행한다.

## 붙임 1

##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6조의3(소통기획담당관) ① (생략)</p> <p>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통기획담당관은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임용되는 개방형직위로 임기제공무원 중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p> <p>③ (생략)</p>	<p>제6조의3(소통기획담당관) ① (현행과 같음)</p> <p>&lt;삭제&gt;</p> <p>③ (현행과 같음)</p>
<p>제6조의5(남북교류협력담당관) ① (생략)</p> <p>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남북교류협력담당관은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임용되는 개방형직위로 임기제공무원 중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p> <p>③ (생략)</p>	<p>제6조의5(남북교류협력담당관) ① (현행과 같음)</p> <p>&lt;삭제&gt;</p> <p>③ (현행과 같음)</p>
<p>제7조(기획조정실) ①·② (생략)</p> <p>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u>평가담</u></p>	<p>제7조(기획조정실) ①·② (현행과 같음)</p> <p>③ ----- <u>평가담</u></p>

당관 및 재정관리담당관은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임용되는 개방형직위로 임기제공무원 중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④ ~ ⑮ (생략)

제8조(일자리경제본부) ①·② (생략)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일자리경제본부장과 투자창업과장은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임용되는 개방형직위로 임기제공무원 중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④ 삭제

⑤ ~ ⑯ (생략)

제11조(문화관광국) <13조에서 이동 2014-12-22> ①·② (생략)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도서관정책과장, 마이스산업과장은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임용되는 개방형직위로 임기제공무원 중 일반임

당관-----  
-----  
-----  
-----  
-----  
-----.

④ ~ ⑮ (현행과 같음)

제8조(일자리경제본부) ①·② (현행과 같음)

<삭제>

⑤ ~ ⑯ (현행과 같음)

제11조(문화관광국) <13조에서 이동 2014-12-22> ①·② (현행과 같음)

<삭제>

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④ ~ ⑨ (생 략)

제20조(원장) ① (생 략)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원장은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 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임용되는 개방형직위로 임기제공무원 중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제61조(관장) ① (생 략)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문화예술회관장은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 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임용되는 개방형직위로 임기제공무원 중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④ ~ ⑨ (현행과 같음)

제20조(원장) ① (현행과 같음)

<삭 제>

제61조(관장) ① (현행과 같음)

<삭 제>

## 붙임 2

## &lt;관계법령&gt;

## □ 「지방공무원법」

제29조의4(개방형직위) ① 임용권자는 해당 기관의 직위 중 전문성이 특히 요구되거나 효율적인 정책 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공직 내부나 외부에서 적격자를 임용할 필요가 있는 직위를 개방형직위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법」 등 지방자치단체의 조직 관계 법령이나 조례·규칙에 따라 시·도는 5급 이상, 시·군·구는 6급 이상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는 직위 중 임기제공무원으로도 보할 수 있는 직위는 개방형직위로 본다.

② 임용권자는 제1항에 따른 개방형직위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위별로 직무의 내용·특성 등을 고려하여 직무수행 요건을 설정하고 그 요건을 갖춘 사람을 임용하여야 한다.

③ 임용권자는 개방형직위를 지정·변경하거나 직위별 직무수행 요건을 설정·변경하려면 미리 해당 인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④ 개방형직위의 임용후보자 선발시험은 제32조제3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사위원회에서 실시한다.

⑤ 그 밖에 개방형직위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4조(개방형직위의 충원 시기) ① 임용권자는 제2조에 따라 특정 직위를 개방형직위로 지정하여 최초로 임용하는 경우에는 그 직위에 임명할 수 있는 공무원의 직급에 결원이 있거나 결원이 발생하였을 때 법 제29조의4제2항에 따른

직무수행 요건을 갖춘 사람을 지체 없이 임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둘 이상의 직급으로 임명할 수 있는 개방형직위에 경력직공무원이 임용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직위에 임용되어 있는 공무원의 직급에 결원이 있거나 결원이 발생하였을 때 임용하여야 한다.

② 임용권자는 제5조,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절차와 방법에 따라 임용(이하 “개방형임용”이라 한다)된 개방형직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개방형임용을 하여야 한다.

1. 개방형직위에 임용된 사람의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2. 해당 직위에 결원이 발생하는 경우
3. 해당 개방형직위를 변경하는 경우

③ 임용권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임용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1. 개방형임용을 하기 위하여 해당 직위에 임용되어 있는 경력직공무원을 소속 기관으로 전보(轉補)하거나 다른 기관으로 파견하여야 하는 경우
2. 그 밖에 인사 운영상 제1항에 따라 개방형임용을 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 제8조(개방형직위의 임용방법 등)

① 임용권자는 경력경쟁임용등(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임용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방법으로 개방형직위에 공무원을 임용한다. 다만, 개방형임용 당시 경력직공무원(임기제공무원은 제외하며, 이하 제10조, 제11조, 제15조 및 제18조에서 같다)인 사람은 전보(다른 기관과의 전입·전출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승진 또는 전직의 방법으로 임용할 수 있다.

②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를 제외하고는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하여야 한다.

1. 제1항 단서에 따라 임용하는 경우

2. 법 제27조제2항제7호에 따라 국가공무원을 그 직급(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경우 그 직위와 곤란성 및 책임도가 유사한 직위를 말한다.

이하 제18조제1항에서 같다)에 해당하는 지방공무원으로 경력경쟁임용 등을 하는 경우

③ 개방형직위에 공무원을 임용하는 경우 인사위원회의 승진심사와 전직 또는 경력경쟁임용등의 시험은 제5조에 따른 선발시험으로 같음한다.

####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1조(개방형직위운영에 따른 직급기준의 특례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지방공무원법」 제29조의4에 따른 개방형직위로 지정된 실장·국장·과장·담당관 등 보조·보좌기관의 직위와 소속기관의 장이나 그 보조·보좌기관의 직위는 이 영에서 규정된 직급기준에도 불구하고 임기제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임기제공무원이나 경력직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개방형직위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붙임 3.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 발생 요인

- 해당사항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3. 미첨부 사유

- 본 조례 개정안은 상위법령 개정예 따라 근거조항을 변경하-는 사안으로 비용부담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비용추계서를 미 첨부함.

4. 작성자: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박재연

## 입법예고문

인천광역시입법예고 제2022-10호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 설치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2년 1월 27일

인천광역시장

##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 설치 조례 시행규칙

##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1. 제안이유

장기적으로 운영되지 않거나, 지정 필요성이 없어진 개방형직위에 대한 지정을 해제하여 개방형직위 운영의 내실을 기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가. 개방형직위 임용 조항 삭제(안 제3조제2항)

###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2월4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참조: 정책기획관, 주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 본관 304호)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담당자 원윤호(전화번호 032-440-2152, 팩스번호 032-440-8628, 전자메일 manyearsnow@korea.kr)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연락처번호

※ 이 조례(규칙)의 입법안은 인천광역시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홈페이지 주소: <https://www.incheon.go.kr/legal/>)

### 4. 참고사항

가. 신·구조문대비표: 붙임 참조

나. 관계법령: 붙임 참조

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붙임 참조

인천광역시규칙 제 호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안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을 삭제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22년 2월 17일부터 시행한다.

## 붙임 1

##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3조(차장) ① (생략)</p> <p>② 제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차장은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임용되는 개방형직위로 임기제공무원 중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p> <p>③ (생략)</p>	<p>제3조(차장) ① (현행과 같음)</p> <p>&lt;삭제&gt;</p> <p>③ (현행과 같음)</p>

## 붙임 2

## &lt;관계법령&gt;

## □ 「지방공무원법」

제29조의4(개방형직위) ① 임용권자는 해당 기관의 직위 중 전문성이 특히 요구되거나 효율적인 정책 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공직 내부나 외부에서 적격자를 임용할 필요가 있는 직위를 개방형직위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법」 등 지방자치단체의 조직 관계 법령이나 조례·규칙에 따라 시·도는 5급 이상, 시·군·구는 6급 이상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는 직위 중 임기제공무원으로도 보할 수 있는 직위는 개방형직위로 본다.

② 임용권자는 제1항에 따른 개방형직위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위별로 직무의 내용·특성 등을 고려하여 직무수행 요건을 설정하고 그 요건을 갖춘 사람을 임용하여야 한다.

③ 임용권자는 개방형직위를 지정·변경하거나 직위별 직무수행 요건을 설정·변경하려면 미리 해당 인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④ 개방형직위의 임용후보자 선발시험은 제32조제3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사위원회에서 실시한다.

⑤ 그 밖에 개방형직위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4조(개방형직위의 충원 시기) ① 임용권자는 제2조에 따라 특정 직위를 개방형직위로 지정하여 최초로 임용하는 경우에는 그 직위에 임명할 수 있는 공무원의 직급에 결원이 있거나 결원이 발생하였을 때 법 제29조의4제2항에 따른

직무수행 요건을 갖춘 사람을 지체 없이 임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둘 이상의 직급으로 임명할 수 있는 개방형직위에 경력직공무원이 임용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직위에 임용되어 있는 공무원의 직급에 결원이 있거나 결원이 발생하였을 때 임용하여야 한다.

② 임용권자는 제5조,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절차와 방법에 따라 임용(이하 “개방형임용”이라 한다)된 개방형직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개방형임용을 하여야 한다.

1. 개방형직위에 임용된 사람의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2. 해당 직위에 결원이 발생하는 경우
3. 해당 개방형직위를 변경하는 경우

③ 임용권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임용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1. 개방형임용을 하기 위하여 해당 직위에 임용되어 있는 경력직공무원을 소속 기관으로 전보(轉補)하거나 다른 기관으로 파견하여야 하는 경우
2. 그 밖에 인사 운영상 제1항에 따라 개방형임용을 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 제8조(개방형직위의 임용방법 등)

① 임용권자는 경력경쟁임용등(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임용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방법으로 개방형직위에 공무원을 임용한다. 다만, 개방형임용 당시 경력직공무원(임기제공무원은 제외하며, 이하 제10조, 제11조, 제15조 및 제18조에서 같다)인 사람은 전보(다른 기관과의 전입·전출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승진 또는 전직의 방법으로 임용할 수 있다.

②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를 제외하고는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하여야 한다.

1. 제1항 단서에 따라 임용하는 경우

2. 법 제27조제2항제7호에 따라 국가공무원을 그 직급(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경우 그 직위와 곤란성 및 책임도가 유사한 직위를 말한다.

이하 제18조제1항에서 같다)에 해당하는 지방공무원으로 경력경쟁임용 등을 하는 경우

③ 개방형직위에 공무원을 임용하는 경우 인사위원회의 승진심사와 전직 또는 경력경쟁임용등의 시험은 제5조에 따른 선발시험으로 같음한다.

####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1조(개방형직위운영에 따른 직급기준의 특례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지방공무원법」 제29조의4에 따른 개방형직위로 지정된 실장·국장·과장·담당관 등 보조·보좌기관의 직위와 소속기관의 장이나 그 보조·보좌기관의 직위는 이 영에서 규정된 직급기준에도 불구하고 임기제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임기제공무원이나 경력직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개방형직위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붙임 3.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 발생 요인

- 해당사항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3. 미첨부 사유

- 본 조례 개정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근거조항을 변경하는 사안으로 비용부담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비용추계서를 미첨부함.

4. 작성자: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박재연